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55 호 2020. 9. 24.(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0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4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3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8호[호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1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69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70호[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94호[공인 신규 등록 공고]..... 2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양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양양”을 “순화”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1조)

- 사기양양을 → 사기를 드높이기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

- 입방미터 → 세제곱미터

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3조)

- 순화양양 → 순화

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4조)

- 미연에 → 미리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대상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전통문화 관련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제공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들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문화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4. 지역문화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제5조)
- 라. 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제6조)
- 마. 생활문화 지원(제7조)
- 바. 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성 등(제9조 ~ 제14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63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점용)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천동 745-35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영구 830㎡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9. 16. ~ 204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6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판지2길 37	구유동 327 외 1필지 (327-1)	2020. 9. 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168호

##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1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명칭 :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936-107번지 일원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45필지, 11,058.0m<sup>2</sup>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6)

붙임 : 지적확정조서 1부. 끝.

##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 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m <sup>2</sup> )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합 계	48필지		11,127.0	45필지		11,058.0	-69				
1	호계동	469	대	119	호계동	469	대	425.8	306.8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	호계동	470	대	241	호계동	470	대	241		김*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3	호계동	470-2	대	213	호계동	470-2	대	186.6	-26.4	주*엽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4	호계동	470-3	도로	29	호계동	470-3	도로	23.3	-5.7	김*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5	호계동	471-1	대	324	호계동	471-1	대	280.4	-43.6	최*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6	호계동	471-2	대	555	호계동	471-2	대	487.7	-67.3	문*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7	호계동	471-4	대	450	호계동	471-4	대	450		최*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8	호계동	471-5	대	50	호계동	471-5	대	63.8	13.8	문*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9	호계동	471-6	대	21	호계동	471-6	대	30.5	9.5	문*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0	호계동	471-7	대	150	호계동	471-7	대	174.5	24.5	문*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1	호계동	472-5	전	2	-	-	-	말소	-2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말소
12	호계동	494-1	전	387	호계동	494-1	전	387		정*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44번길***	
13	호계동	495-1	전	569	호계동	495-1	전	569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4	호계동	495-2	대	106	호계동	495-2	대	106		최*철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5	호계동	495-3	대	255	호계동	495-3	대	236.1	-18.9	한*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6	호계동	495-4	대	218	호계동	495-4	대	215.1	-2.9	한*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7	호계동	495-5	대	420	호계동	495-5	대	420		최*철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18	호계동	496	대	367	호계동	496	대	352.1	-14.9	김*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9	호계동	497	대	269	호계동	497	대	269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0	호계동	497-1	대	157	호계동	497-1	대	155.4	-1.6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1	호계동	498	전	744	호계동	498	전	480.6	-263.4	국(기획재정부)		
22	호계동	499	대	446	호계동	499	대	446		최*준(외 1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평리길***	
23	호계동	543	대	199	호계동	543	대	199		김*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	호계동	543-1	전	271	호계동	543-1	전	271		김*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5	호계동	544	대	208	호계동	544	대	208		김*자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6	호계동	545	전	169	호계동	545	전	169		최*철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27	호계동	548-1	전	552	호계동	548-1	전	552		최*철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28	호계동	548-2	대	317	호계동	548-2	대	378.6	61.6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9	호계동	936-99	대	93	호계동	936-99	대	189.1	96.1	울산광역시		
30	호계동	936-100	하천	45	호계동	936-100	하천	38.5	-6.5	울산광역시		
31	호계동	936-102	전	111	호계동	936-102	전	174.5	63.5	울산광역시		
32	호계동	936-103	전	341	호계동	936-103	전	226.6	-114.4	울산광역시		
33	호계동	936-104	대	320	-	-	-	말소	-320	울산광역시		말소
34	호계동	936-105	전	161	호계동	936-105	전	136.6	-24.4	울산광역시		
35	호계동	936-106	하천	42	호계동	936-106	하천	3.2	-38.8	국(국토교통부)		
36	호계동	936-107	대	156	호계동	936-107	대	180.9	24.9	강*이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37	호계동	936-108	전	29	호계동	936-108	전	19.7	-9.3	김*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38	호계동	936-109	하천	10	호계동	936-109	하천	6.5	-3.5	국(국토교통부)		
39	호계동	936-154	하천	28	호계동	936-154	하천	50.9	22.9	국(국토교통부)		
40	호계동	936-155	하천	37	호계동	936-155	하천	57.3	20.3	국(국토교통부)		
41	호계동	936-266	하천	998	호계동	936-266	하천	937.8	-60.2	국(국토교통부)		
42	호계동	936-285	전	13	호계동	936-285	전	14.8	1.8	울산광역시		
43	호계동	936-313	도로	2	-	-	-	말소	-2	최*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말소
44	호계동	936-315	대	42	호계동	936-315	대	44.2	2.2	최*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45	호계동	940	도로	807	호계동	940	도로	1,145.60	338.6	국(농림수산부)		
46	호계동	940-13	대	46	호계동	940-13	대	40.9	-5.1	김*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47	호계동	940-14	도로	16	호계동	940-14	도로	9	-7	국(농림수산부)		
48	호계동	940-15	대	22	호계동	940-15	대	4.4	-17.6	주*엽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069호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천곡재전길' 도로명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9. 24. ~ 10. 8.(14일간)

2. 심의 결과 및 변경 내용

○ 가결('천곡재전길'을 '천곡제전길'로 변경)

- 심의기간 : 2020. 9. 15. ~ 9. 16.(서면)

- 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 변경 절차

<b>도로명 변경 신청</b>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b>주민 의견 수렴 공고</b>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b>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심의결과 -변경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결과 통보
		<b>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b>	동의 만료일부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4. 기타사항

○ 심의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2020. 7. 27.)를 기준으로 한 '천곡재전길'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도로명이 최종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3)로 연락 바랍니다.

## < 도로명 변경 심의 결과 >

□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구분	도 로 명	도로 구분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1	변경 전	천곡재전길	길	중산동 천곡동	중산동 808-10	천곡동 183-3	1399.591	3	21	1→138	‘제전’이 저전리(楮田里)에서 기원 하였으므로 ‘천곡제전길’로 변경함
	변경 후	천곡제전길	길	중산동 천곡동	중산동 808-10	천곡동 183-3	1399.591	3	21	1→138	

□ 도로명 변경 도면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070호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개정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 사용자 개별적 반환 사유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관광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2) 전화번호 : 052)241-7751, 팩스번호 : 052)241-7739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u>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협약체결 등) ①----- ----- ----- <u>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1~2(생략)</p> <p>3. <u>(신설)</u></p>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3. <u>납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u></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094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 복구 옴부즈만인	울산광역시 복구 옴부즈만 구성에 따른 신규 개각	2020. 9. 24.		